

보 고 서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목 차]

I.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 결과

- 1.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3
- 2.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초 결과 4

II. 실태조사 결과분석

- 1. 최저임금 5
- 2. 법정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6
- 3. 아르바이트 경험 7
- 4. 노동시간 8
- 5. 시 급 10
- 6. 부당행위/처우 11
- 7. 아르바이트 장소 14
- 8. 배달 아르바이트 17
- 9. 아르바이트 시기/목적 20
- 10. 휴게시간 22
- 11. 근로계약서 작성 25
- 12.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27
- 13. 부당한 대우 시 대응 28
- 14.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법 30
- 15.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31
- 16. 청소년이 말하는 아르바이트 문제점과 의견 33

III. 개선방안

- 1.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제재 강화 36
- 2. 교육당국 인식개선과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확대 36
- 3. 눈높이를 맞추는 활동과 지속적 관찰 37

- [첨부자료] 실태조사 설문지 38

I. 실태조사 개요 및 기초 결과

1.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목 적

- 아산지역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의 문제점 파악
-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
- 이를 통해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상담, 노동인권교육의 정책적 방향 수립

조사기간

2016.10.11. ~ 11. 30.

조사대상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상담, 노동인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 고교

조사방법

실태조사서 배포 후 수거방식

조사장소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3개교)

조사기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2.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초 결과

□ 응답자 기초조사 결과

- 아산지역고등학교 10개교 중 3개교 2~3학년 학생
- 전체응답자 1051명 중 남학생 622명, 여학생이 429명
- 응답자 중 연령(생년)기준 분포는 1997년(만19세) 7명, 1998년생(만18세) 357명, 1999년생(만17세) 626명, 2000년생(만16세) 60명.
- 학교별 아르바이트 현황 응답자대비 아르바이트 비율(%)

학 교	응답자 수	현재 알바 중&경험자	비율(%)	비 고
온양용화고교	219명	123명	56.1%	
온양여자고교	325명	96명	29.5%	
온양고교	507명	153명	30.1%	
전 체	1051명	372명	35.4%	

* 2014년 전국 청소년(13~24세)의 31.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2016 청소년 통계

- 아르바이트 경험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응답자1051명 중 372명으로 35.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응답자 중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135명(12.8%)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7명(22.5%).
- 남학생 전체 622명 중 207명(33.2%)이, 여학생 전체 429명 중 162명(3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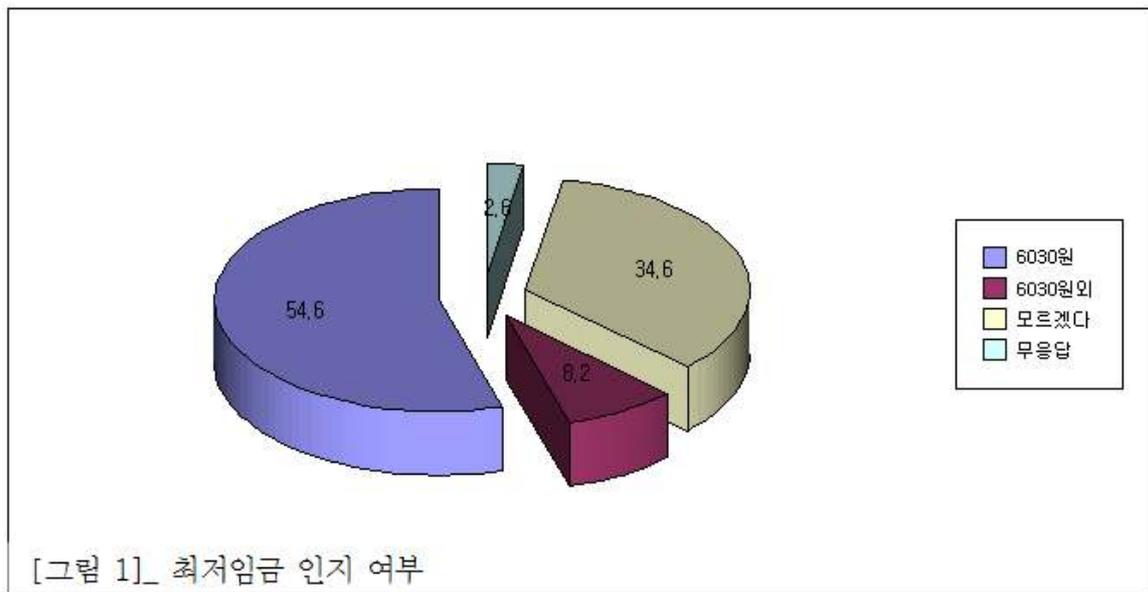
Ⅱ.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최저임금

1).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54.6%에 불과.

- 2016년 최저임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70명으로 전체응답자 1051명 중 63.7%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이 중 603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574명(54.6%)으로 나머지 86명은 6030원이 아닌 다른 금액을 적어주었다. 최저임금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364명으로 전체응답자 중 34.63%로 여기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에 표시한 응답자까지 더하면 2016년 최저임금액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응답자의 42.8%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6030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291명으로 나머지 응답자의 경우 모른다 50명(13.5%), 6030원의 금액에 표시한 경우가 21명(5.69%), 무응답이 7명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21.1%의 청소년이 최저임금 6030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2).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최저임금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남.

- 응답 남학생 622명 중 312명인 50.1%가 최저임금(6030원)에 대해 모르거나 시급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429명 중 138명인 32.1%가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폭 또한 크게 나타났다.

2. 법정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 법정임금(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산재보험 ‘알고 있다’ 27.8%에 불과

- 법정임금(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설문응답자 1051명 중 293명(27.8%)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모른다’는 응답은 746명(70.9%)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인원의 1/4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인원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5.4%로 나타난 점을 참고로 보면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법정임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추정해 볼 수 있음.

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60.7%가 법정임금(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과 산재보험에 대해 모른다

-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2명 중 ‘법정임금과 산재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224명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0.7%로 나타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36명 중 77명(56.6%)이 법정임금(수당)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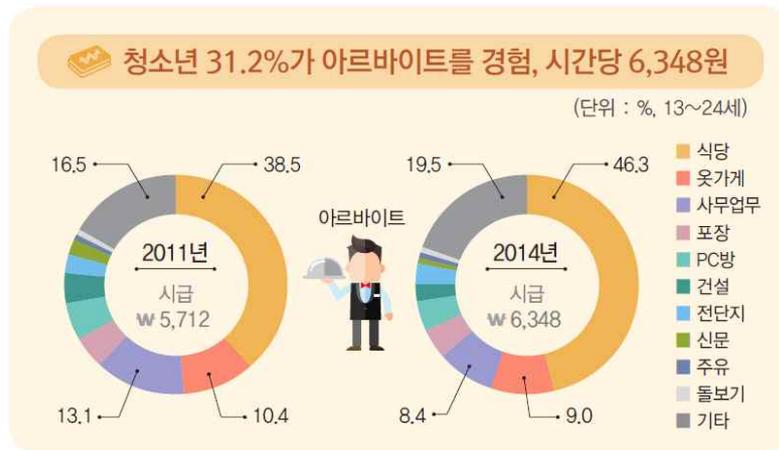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학생(30.7%)이 남학생(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르바이트 경험

1).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 전체응답자(1051명) 중 35.39%(372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남학생 전체 622명 중 207명(33.2%)이, 여학생 전체 429명 중 162명(37.7%)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이 지난 2016년 5월에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평균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1.2%로 남성이 27.9%, 여성이 34.9%’로 아산지역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_ *자료 : 2016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표 1]_ 아르바이트 경험 / 청소년 노동시간

(단위 : %, 시간:분, 원)

	아르바이트 경험률			
	아르바이트 경험률	최근1년 경험률 ¹⁾	일일 근로시간	시간당 금액
2011	38.1	89.1	6:34	5,712
2014	31.2	88.3	6:23	6,348
남 자	27.9	89.8	6:44	6,275
여 자	34.9	87.0	6:03	6,415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각년도

주 : 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4. 노동시간

1). 청소년 8시간이상 장시간노동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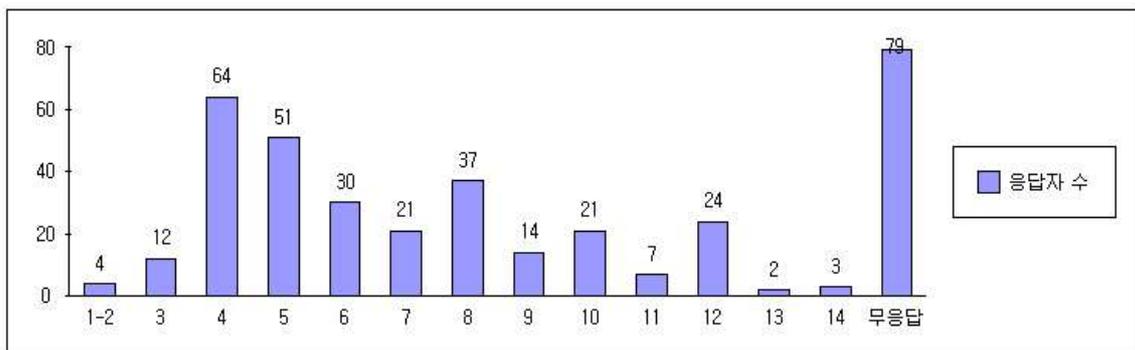
- 응답 청소년의 노동시간(아르바이트)은 4시간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시간이 13.8%, 8시간이 10%, 6시간이 8.1%, 12시간이 6.5%, 10시간 5.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는 108명(29.2%)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4년 아산시노동상담소가 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 15.3%, 4~8시간이 5시간 45.3%로 가장 많았고, 9~12시간 하는 경우도 25.1%” 라고 밝히고 있다.

-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서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자료와 비교 해봐도 이에 대한 개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_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알바 중인 청소년 노동시간

시 간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이상	무응답
응답자	4	12	64	51	30	21	37	14	21	7	24	2	3	79
(%)	1.1	3.3	17.3	13.8	8.1	5.7	10	3.8	5.7	1.9	6.5	0.5	0.8	21.4



[그림 3]_ 아산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시간

2). 청소년 55.5%는 18세미만, 30.7% 7시간이상 장시간노동

- 이 실태조사 응답자 중 ‘만18세미만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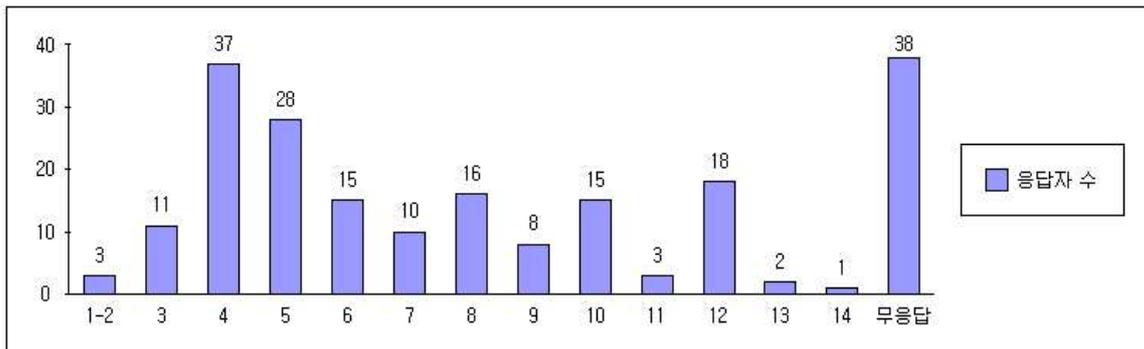
는 경우'는 205명(55.5%)으로 이들 중에서 '1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3명(30.7%)으로 근로기준법 제69조¹⁾에 정한 근로시간 7시간보다 초과하여 노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게는 8시간부터 많게는 1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²⁾ 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중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업종은 식당이고 다음으로 편의점, 판매원, 일용직, 워터파크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근무시간은 7.14시간으로 '일용직과 워터파크'의 평균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105명, 여학생이 100명으로 성별에 따른 노동시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_ 응답자 중 만18세미만 청소년 노동시간

시 간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무응답
응답자	3	11	37	28	15	10	16	8	15	3	18	2	1	38
(%)	1.4	5.3	18.0	13.6	7.3	4.8	7.8	3.9	7.3	1.4	8.7	0.9	0.4	18.5



[그림 4]_ 아산지역 만18세 미만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시간

1)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표 4]_ 아산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상위 5업종 업종별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평균	유효 응답자	~ 4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10시간	10이상
식 당	6.4	181	61	36	30	13	14	27
편 의 점	7	20	5	5	3	5	1	3
판 매 원	6.1	18	3	7	3	1	4	-
일 용 직	7.4	12	1	3	1	4	2	1
워터파크	8.8	9	-	-	-	4	4	1
계	7.14	240	70	51	37	23	25	32

5. 시 급

1). 가장 높은 시급은 ‘마트 배달’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6030원이 36명(26.4%), 6070~6300원이 26명 (19.1%), 6500~6800원은 27명(19.8%), 7000~7500원 27명(19.8%), 8000원 2명, 10000원 1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경우도 4명(2.9%)이 있었으며, 이들은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6030원을 지급하는 주 업종으로는 식당, 패스트푸드, 편의점이, 6070~6300원에서는 식당, 패스트푸드, 판매원, 편의점, 6500~8000원은 대부분 식당으로 나타났고, 10,000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마트에서 배달을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2).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시급평균은 6452원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36명 중 시급이 얼마인지에 응답한 청소년은 123명으로 이들의 시급평균은 6452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시급평균은 6471원이고, 여학생의 시급평균 6432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9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식 당” 아르바이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급 높다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중 가장 많은 69.4%가 일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 시급평균이 6518원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장소가 식당인 경우, 전체 시급평균보다 66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당 아르바이트의 성별분석에서는 남학생이 6507원으로 전체남학생 시급평균 6471원보다 3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6528원으로 전체여학생 시급 평균 6432원보다 9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시급평균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9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1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_ 아르바이트 시급 성별별 분류

현재 아르바이트 중에 있는 청소년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식 당”				
구 분	전 체	성 별	인 원	시 급	구 분	전 체	성 별	인 원	시 급
인 원	123명	남성	64명	6471원	인 원	85명	남성	41명	6507원
시 급 (평균)	6452원	여성	59명	6432원	시 급 (평균)	6524원	여성	44명	6528원

-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의 평균시급은 6189원으로 전체 평균시급보다 263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6030원보다 약 150원~160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당행위/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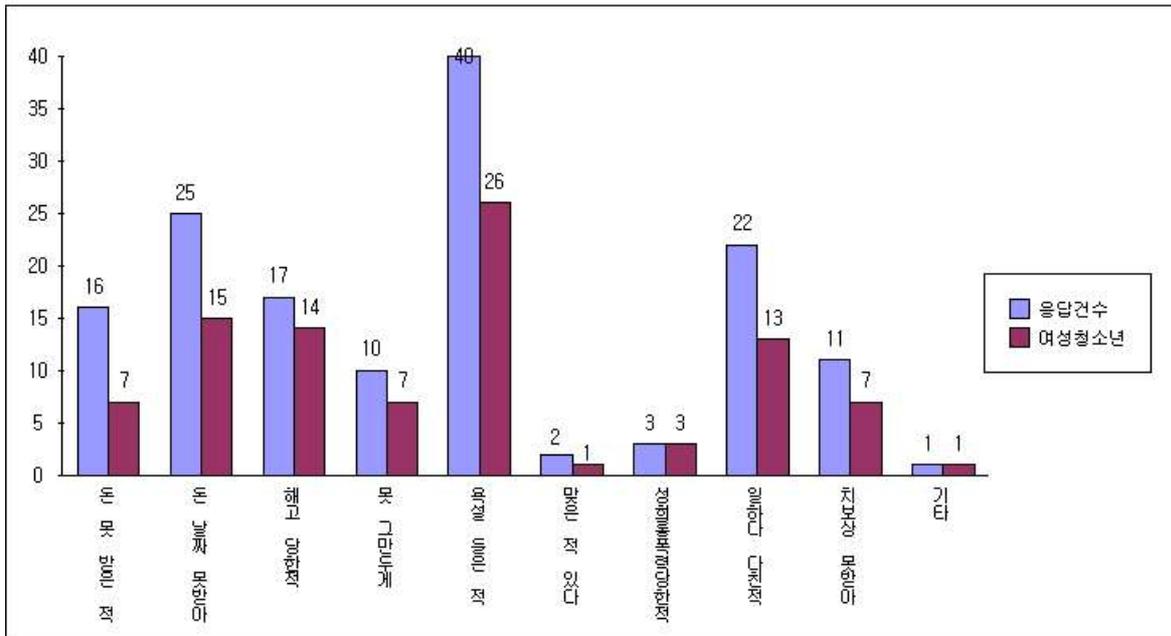
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9.62%가 부당 행위/처우 경험

- 부당한 행위/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3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19.62%에 달한다. 응답자 중 남학생이 32명, 여학생이 41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_ 부당한 행위/처우를 받았다는 응답 유형

순	내 용	응답수	남	여	2014년
1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	40(27.2%)	14	26	16.4%
2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	25(17.0%)	10	15	16.9%
3	일하다 다친 적 있다.	22(14.9%)	9	13	18.5%
4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	17(11.5%)	3	14	9.1%
5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	16(10.8%)	9	7	14.2%
6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보상 제대로 못 받은 적 있다	11(7.4%)	4	7	7.6%
7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	10(6.8%)	3	7	6.3%
8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 당한 적 있다	3(2.0%)	-	3	2.3%
9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	2(1.3%)	1	1	1.7%
10	기타(내용 - 물 을 못 마시게 함)	1	-	1	
		147	53	94	

* 유형수가 부당한 행위/처우 받았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여러 번 당한 청소년 있기 때문.



[그림 5]_ 부당한 행위(처우) 유형과 여학생비율

2) 부당한 행위/처우 유형별 아르바이트 장소

-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은 모두 “식당”이고, 응답자는 모두 여학생이었다.
-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이 일하는 곳은 식당(32건), 판매원/워터파크(각 3건), 일용직(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식당(12건), 편의점(2건), 모텔하우스, 카페, 웨딩홀, 당구장, 워터파크, 전단지(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받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10건), 전단지(2건), 편의점, 판매원, 치킨팔이, 주차요원(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14건), 건설등 일용직, 키즈카페(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일하다 다친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16건), 판매(2건), 배달, 전단지, 워터파크(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보상 제대로 못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11건).
- “그만두고 싶는데 못 그만두게 한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10건).
-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맞은 적 있다”는 응답은 식당(2건).
- “기 타 (물을 못 마시게 함)” 응답은 편의점(1건).

3). 부당 행위/처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

- 부당한 행위/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남학생이 32명(43.8%), 여학생이 41명(56.1%)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 유형별 건수로 분류한 결과 전체 147건 중 남학생이 53건(36.0%), 여학생이 94건(63.9%)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더 많이 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응답자가 많은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 있다’,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 ‘일하다 다친 적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곳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아르바이트 장소

1). 아산 청소년 60.5%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물음에 350명(33.3%)의 청소년이 응답하였고 일하는 곳은 ‘식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은 식당이고,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 판매원, 일용직, 워터파크, 웨딩홀, 패스트푸드, 안전요원/전단지, 공장/마트/카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_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주유원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응답건수	26 (7.4)	212 (60.5)	6 (1.7)	1 (0.2)	21 (6.0)	16 (4.5)	4 (1.1)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카페	패스트푸드
응답건수	4 (1.1)	5 (1.4)	10 (2.8)	8 (2.2)	5 (1.4)	4 (1.1)	7 (2.0)
장 소	주차요원	키즈카페	기념품행사	미용실	PC방	*기타 - 과수원, 당구장 스태프, 모델하우스, 서비스업, 전국체전, 치킨팔이, 휴게소, 프리랜서	
응답건수	3 (0.8)	3 (0.8)	2 (0.5)	2 (0.5)	2 (0.5)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139명(13.2%) 중 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식당, 다음으로 편의점, 패스트푸드, 판매원, 배달/마트/웨딩홀, PC방/미용실/일용직/카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_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이 일하는 곳 (2016. 11.기준)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주유원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응답건수	16 (11.5)	89 (64.0)	3 (2.1)	-	6 (4.3)	2 (1.4)	-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카페	패스트푸드
응답건수	3 (2.1)	1 (0.7)	1 (0.7)	3 (2.1)	1 (0.7)	2 (1.4)	7 (5.0)
장 소	주차요원	키즈카페	기념품행사	미용실	PC방	*기타-서비스업	
응답건수	-	-	-	2 (1.4)	2 (1.4)		

2). 성 별

- 남학생(209명)과 여학생(162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곳을 정리하면

남학생은 식당, 편의점, 일용직, 워터파크/판매점, 전단지/배달/웨딩홀 등
여학생은 식당, 판매원, 편의점, 패스트푸드, 키즈카페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20%가량 높게 나타났고, 이외 업종에서는 판매원과 편의점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_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학생 209명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기념품행사
응답건수	18 (8.6)	101 (48.3)	5 (2.3)	10 (4.7)	16 (7.6)	2 (0.9)	2 (0.9)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주차요원	카페
응답건수	4 (1.9)	5 (2.3)	10 (4.7)	7 (3.3)	5 (2.3)	2 (0.9)	2 (0.9)
장 소	패스트푸드	주유원, 과수원, 당구장, 모델하우스, 서비스업, 스테프, 전국체전, 치킨팔이 프리랜서, PC방, 휴게소					
응답건수	3 (1.4)						

[표 10]_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 162명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판매원	키즈카페	패스트푸드	웨딩홀
응답건수	8 (4.9)	111 (68.5)	1 (0.6)	11 (6.7)	3 (1.8)	4 (2.4)	1 (0.6)
장 소	PC방	미용실	카페	공장	주차요원		
응답건수	1 (0.6)	2 (1.2)	2 (1.2)	2 (1.2)	1 (0.6)		

3). 학교별

① 온양용화고등학교

3학년 응답자로 219명 중 122명(55.7%)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식당, 판매원, 편의점, 안전요원, 배달, 일용직 순으로 남녀공학으로 성별 특징 (여학생은 식당 중심, 남학생은 식당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로도 분산 되어 있음)이 모두 나타났다.

[표 11]_ 온양용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주유원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응답건수	6	65	3	1	8	3	1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카페	패스트푸드
응답건수	1	3	1	1	-	-	2
장 소	주차요원	키즈카페	기념품행사	미용실	PC방	모델하우스, 스테프 프리랜서	
응답건수	1	1	-	1	2		

② 온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응답자로 326명 중 96명(29.5%)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 고, 식당, 편의점, 판매원 순으로 여학생의 특징인 식당에 집중 되고 다른 업종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2]_ 온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주유원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응답건수	5	70	-	-	4	-	2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카페	패스트푸드
응답건수	-	-	-	-	-	2	2
장 소	주차요원	키즈카페	기념품행사	미용실	PC방		
응답건수	1	2	-	1	-		

③ 온양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응답자로 507명 중 153명(30.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당, 편의점, 일용직, 워터파크/판매원 순으로, 남학생들의 특성인 '식당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로도 분산되어 있음' 경향이 나타났다.

[표 13]_ 온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

장 소	편의점	식당	배달	주유원	판매원	일용직 (건설등)	공장
응답건수	15	77	3	-	9	13	1
장 소	마트	안전요원	워터파크	웨딩홀	전단지	카페	패스트푸드
응답건수	3	2	9	7	5	2	3
장 소	주차요원	키즈카페	기념품행사	미용실	PC방	*기타 - 과수원, 당구장 서비스업, 치킨팔이, 휴게소	
응답건수	1	-	2	-	-		

8. 배달 아르바이트

1). 배달 오토바이(차량) 보험가입여부 대부분 모른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건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 둘 다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1건, '잘 모른다'는 응답은 4건, 무

응답이 1건으로 실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은 것만 보고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배달 대행업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모바일 앱 사용의 증가로 프랜차이즈 외에도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배달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이와 연계한 배달대행업체들이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배달서비스업에 유입되게 되었다.

- 배달서비스는 대부분 직접운영하기보다 배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건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배달대행업자는 배달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아닌 각자를 개별사업자 형식으로 운영되는 특수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 또한, 배달 건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지키지 않는 무리한 배달에, 이를 이용하는 업주들이 '20, 30분 내 배달' 등 무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 오토바이 등 장비가 없어도 유상으로 대여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래 그림 '배달대행업체 구인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모집에 제한도 거의 없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재해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아산지역 청소년들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림 6]_ 고용노동부 '청소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심층면접 자료 중

"배달대행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목숨 걸고 오토바이 그렇게 타고 싶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타는 거지. OOOO딜리버리는 많아야 2개씩 묶어가지고 천천히 갔다 오는데, 개네들은 신호도 위반해야 되고."(심층면접참여자 F)

"시급 받는 거보다는 많이 벌죠. 아무래도. 한 건 배달할 때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님한테 2,500원 받아요. 2천5백원, 3천원 이렇게 받아요. 하루에 벌면 10만원~12만원 정도. 무리를 좀 해야 해요. 빨리 갔다 와서... 알바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돈 벌려면 서로 가려고. ... 위험해요, 사고 나면 또 오토바이 수리 같은 거나 치료비 같은 것도 각자 개인부담이어서. 또 밥값이나 기름값도 개인부담이구요. 세금도 없어요."(심층면접참여자 J)

[그림 7]_ 알바00 아산지역 배달대행업체 구인광고

천안아산 배달대행 기사모집

등록일 : 2017.01.2 ... | 업데이트 : 2017.01.2

기간 2017년 2월 22일

주소 충남 아산시 ...
동 정보: 충남 아산시 전체

인근지하철 서울(수도권) 1호선 배방
서울(수도권) 1호선 신장
서울(수도권) 1호선 온양온천

채용정보 지원자격 회사정보

급여 월급 2,000,000 원 급여협의 가능, 주급가능

근무기간 6개월-1년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1700 ~ 2400

모집직종 생산·기능·운전·배달 > 배달 > 원동기배달, 음식점배달, 차킨배달, 피자배달
생산·기능·운전·배달 > 운전직 > 대리운전, 운전, 지입기사
생산·기능·운전·배달 > 픽서비스·택배 > 배달

상세채용정보 확대보기 +

- 근면 성실한 배달대행기사님 모집합니다. (지입기사 환영)
- 겨울방학 학생아르바이트 대 환영
- 오토바이 *무상* 렌탈해드립니다.
- 건당 3000원입니다.
- 휴무는 주1회입니다. (휴무 협의도 가능)

업무내용: 차킨, 피자, 야식, 분식, 회 등등...그릇수거가 없는 가맹점들의 배달주운을 대신 수행해 주시는 업무입니다.

근무요일: 주6일 (평일 주1회 휴무)

근무시간: #오후6시 ~저녁12시
#오후5시 ~저녁12시 (투입 추천!)

가게에 눈치 볼것없이 가게에 물건을 받아 손님한테 가져다 주기만 하면되기 때문에 어려울것 없이 즐겁게 일 할수있습니다.

다들 가족같은 분위기에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없이 일하러 오시면됩니다.

나이는 상관없고 원동기면허 소지자,오토바이 소지자 환영합니다.

오토바이 렌트도 가능하니 없으신 분들은 걱정 하시기 말고 연락주세요.

지리는 모르셔도 휴대폰 하나로 찾아 갈 수있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화걸기(전화지원으로 가능)

- 특히, 청소년들은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치료나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형사 법률책임까지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개정’등의 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림 8]_ *자료 : 주간동아 1057호 ‘되살아난 30분 배달 약몽’ 내용 중

2016년 1057 호
되살아난 30분 배달의 약몽

교통사고를 내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배달원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2013년 11월 고교 3학년이던 공모 씨가 한 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모 씨는 척수 손상을 입어 2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야 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처리를 신청해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모 씨가 일했던 대행업체에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공모 씨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대행업체 업주는 “공씨는 중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급여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대행업체 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배달원은 대리운전기사나 개인화물차 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원은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사고 위험이나 반쯤 책임 모두 배달원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재판부는 “공씨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림 9]_ *자료 : ‘아시아투데이 9월 29일’ 내용 중

[2016 국감] 청소년 음식배달 사고 7년간 사망 63명·부상 3042명

장민서의 기사 더보기 ▼ | 기사승인 2016. 09. 29. 14:14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500여명 정도가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042명이 부상해 산재승인을 받았다.

올해만 해도 2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달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고용부의 조치가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청소년들의 ‘배달 중 교통사고’의 핵심은 빠른 배달 시간에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6월1일 ‘20분 배달제’로 인해 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세 청년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음식점 배달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20분, 30분으로 정한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 아르바이트 시기/목적

1). 학기 중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 응답자 336명 중 ‘학기 중(방과 후+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66명(79.1%)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은 ‘학기 중 주말’이 46.4%, ‘학기 중 방과 후’가 34.2%, ‘방학 중’이 19.3%로 나타났다.

[표 14]_ 알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기간대별 분류

구분	학기 중 방과 후	학기 중 주말	주중+주말	방학 중	하고 싶을 때	돈 필요할 때	시간될 때
응답수	109 (32.4)	151 (44.9)	6 (1.7)	65 (19.3)	2 (0.5)	2 (0.5)	1 (0.2)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기 중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중과 주말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5]_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기간대별 분류

구 분	학기 중 방과 후	학기 중 주 말	주중+주말	방학 중	돈 떨어지면
응답수	62 (47.3)	65 (49.6)	2 (1.5)	1 (0.7)	1 (0.7)

2). 아르바이트 목적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경험, 등록금등 학업관련, 생계비마련 순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알바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응답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계비마련’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업관련’, ‘사회경험’으로 나타났다. ‘용돈’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_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유 1-1

구 분	생계비마련	학업관련	용 돈	사회경험	기타	계
알바경험+ 현재알바 중	11 (4.9%)	17 (7.5%)	205 (90.7%)	23 (10.2%)	10 (4.4%)	226 (100)
현재 알바 중	10 (7.9%)	11 (8.7%)	87 (68.5%)	14 (11%)	5 (3.9%)	127 (100)

[표 17]_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1-2 학교별유형

전체	생계비마련	등록금등	용 돈	사회(일)경험	기타	무응답	
알바경험 有	372 (100)	11 (3.0)	19 (5.1)	279 (75.0)	37 (9.9)	11 (3.0)	15 (4.0)
용화고	123	7(5.7)	10(8.1)	87(70.7)	9(7.3)	4(3.2)	6(4.8)
온여고	96	1(1.0)	3(3.1)	82(85.4)	7(7.2)	2(2.0)	1(1.0)
온양고	153	3(1.9)	6(3.9)	110(71.8)	21(13.7)	5(3.2)	8(5.2)

전체		생계비마련	등록금등	용 돈	사회(일)경험	기타	무응답
현재알바 中	136 (100)	10 (7.4)	11 (8.1)	91 (66.9)	14 (10.3)	6 (4.4)	4 (2.9)
용화고	52	6(11.5)	6(11.5)	33(63.4)	4(7.6)	1(1.9)	2(3.8)
온여고	35	1(2.8)	2(5.7)	28(80.0)	2(5.7)	2(5.7)	0
온양고	49	3(6.1)	3(6.1)	30(61.2)	8(16.3)	3(6.1)	2(4.0)

- 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목적’으로는 ‘원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중, 고 재학생)’가 49%, 다음으로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가 29%,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11.5%로 나타났다.

표 III-3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주목적

구분	전체 빈도 (명)	일 경험	일 즐거움	원하는 소비	생활비 충당	학비 충당	해외여행 연수비용	취업준비 기간용돈	가족 생활비	계	
전체(%)	500	8.2	3.6	29.0	46.4	6.2	3.4	1.0	2.2	100.0	
성별	남	250	10.0	4.8	28.4	46.0	6.8	1.6	0.4	2.0	100.0
	여	250	6.4	2.4	29.6	46.8	5.6	5.2	1.6	2.4	100.0
연령	15~18세	250	11.6	5.2	42.0	33.2	2.0	2.4	0.4	3.2	100.0
	19~24세	250	4.8	2.0	16.0	59.6	10.4	4.4	1.6	1.2	100.0
현재 상태	중/고등학교 재학생	200	11.5	3.5	49.0	29.0	2.0	1.5	0.5	3.0	100.0
	학교 밖 청소년	50	12.0	12.0	14.0	50.0	2.0	6.0	0.0	4.0	100.0
	대학 재학생	200	4.5	1.5	17.5	60.5	12.0	3.0	0.5	0.5	100.0
	대학비진학 청소년	50	6.0	4.0	10.0	56.0	4.0	10.0	6.0	4.0	100.0

[그림 10]_ *자료 : 2015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중

10. 휴게시간

1).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44% 휴게실 시간 없다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72명 중 313명의 청소년이 응답한 휴게실과 휴게시

간이 별도로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와 “없다”가 거의 50:50으로 나타났다.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 제54조3)는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공간과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4)에 명시하고 있다. 관계법령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50%가량은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표 18]_ 휴게시간과 휴게실이 마련 여부

구 분	있 다(%)	없 다(%)	계
계	156(49.8%)	157(50.1%)	313명
현재 아르바이트 중	68(55.7%)	54(44.2%)	122명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	88(46.0%)	103(53.9%)	191명

2). 휴게시간 미부여 식당업에서 가장 심각

- 아산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5개의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부

3)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여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당”의 경우 대부분 노동자 수가 적은 소규모업장 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 실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휴게시간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이외에도 ‘휴게시간,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으로 ‘카페(50%)’, ‘뷔페/연회장(37.5%)’, 편의점(34.6%), 판매원(30%), 일용직(26.6%)등으로 대부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곳의 상위 업종이 요식업과 연관된 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_ ‘아산지역과 고용노동부 청소년실태조사’ 상위 5개 업종 휴게시간 부여여부 비교

구 분		응답 수	휴게 없다	휴게 있다	계
아산지역 상위5개 업종	식당	194	58.7	41.2	100
	편의점	26	34.6	65.3	100
	판매원	20	30.0	70.0	100
	일용직	15	26.6	73.3	100
	워터파크	10	20.0	80.0	100
‘청소년근로 실태조사’ 상위5개 업종	음식점/레스토랑	86	34.9	65.1	100
	편의점	78	29.5	70.5	100
	패스트푸드	31	19.4	80.6	100
	뷔페 연회장	28	28.6	71.4	100
	카페	24	29.2	70.8	100
아산지역 위 항목과 동일업종	패스트푸드	7	-	85.7	100
	뷔페 연회장	8	37.5	62.5	100
	카페	4	50.0	25.0	100

11.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받은 경우'는 28.6%에 불과

- 근로기준법 제17조⁵⁾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⁶⁾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21%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지는 못했지만, 작성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더라도 32%에 불과했다.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36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9명으로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19명으로 13.9%로 나타났다.

- 결국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42.5%에 불과하고 나머지 57%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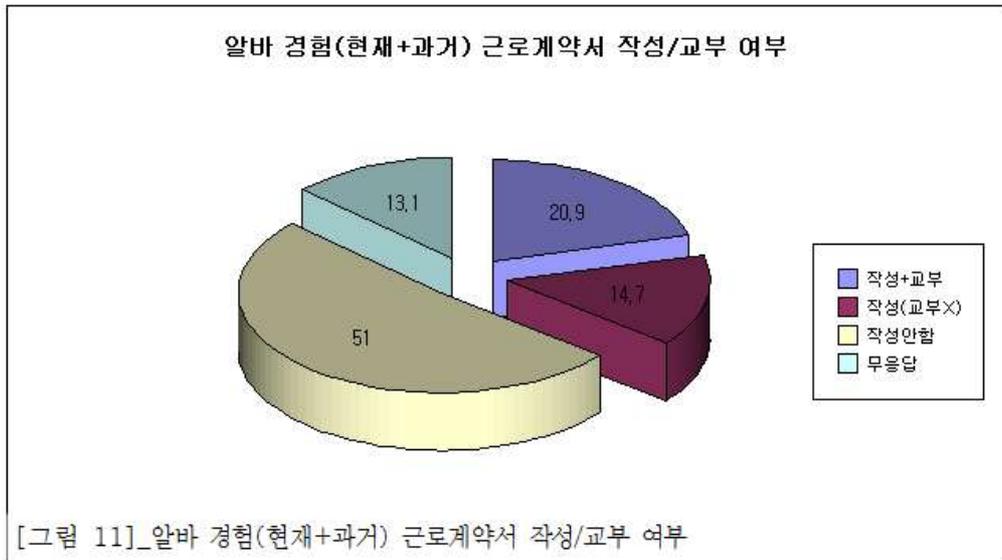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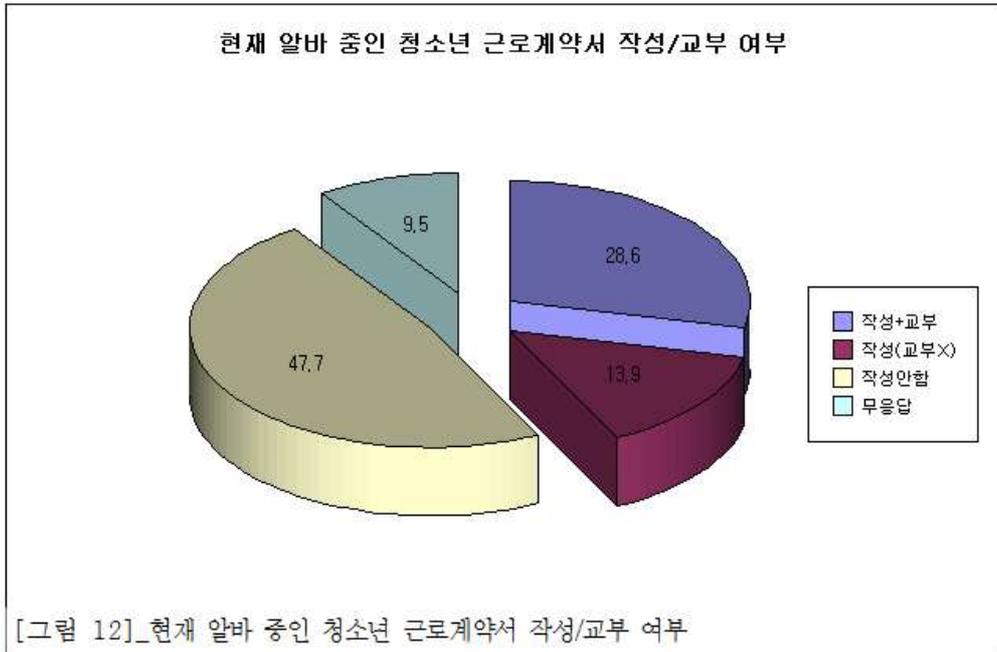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생략)

6)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지난 2014년 아산시노동상담소가 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4.5%로 2013년의 69.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6%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치상으로 아주 적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0%이상인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 근로계약서의 이해 부족

- 2015년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자료(7)는 “근로계약서의 작성비율은 53.2%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미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는데 그치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권익보호와 관련한 교육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눈높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표 20]_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내용이해 정도

구 분		빈도(명)	작 성	작성안함	비 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중,고교 재학생	200	61.5%	38.5%	
구 분		빈도(명)	잘 모름	일부 이해	잘 이해
근로계약서 이해정도	중,고교 재학생	123	19.5%	49.6%	30.9%

*출처 :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중 부분 발췌’

- 아산지역의 청소년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상담 시 참고하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다.

12.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1). 대부분 ‘친구나 지인소개’로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한 청소년 66.6%가 ‘친구나 지인소개’를 꼽아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알바사이트나 웹(18.5%)’, 기타 (4.8%), 업소 구인광고(2.9%), 학교나 선생님 추천, 생활정보지, 직업소개소(0.5%)로 순으로 나타났다.

7) 2015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기타’ 응답에서는 가족추천(6), 무응답(5), 사장님 친분(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_ 아르바이트 정보 경로

구 분	전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알바경험 有	372명	248	2	2	11	2	0	69	18	20
	100%	66.6	0.5	0.5	2.9	0.5	0	18.5	4.8	5.3

①친구나 지인소개 ②학교, 선생님 추천 ③생활정보지 ④업소 구인광고
 ⑤직업소개소 ⑥노동부 워크넷 ⑦알바사이트나 웹 ⑧기 타
 ⑨무응답

- 2015년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친구나 선.후배’가 44.5%, 다음으로 ‘알바몬 등 소개사이트’가 38.5%, 구인광고(8%), 주변지인(7.5%)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구분		전체 빈도 (명)	1)	2)	3)	4)	5)	6)	7)	8)	계
전체(%)		500	28.4	50.4	7.4	5.6	0.6	0.2	7.0	0.4	100.0
성별	남	250	30.8	47.2	8.4	5.2	0.8	0.0	7.2	0.4	100.0
	여	250	26.0	53.6	6.4	6.0	0.4	0.4	6.8	0.4	100.0
연령	15~18세	250	40.4	44.0	6.8	6.8	0.8	0.4	0.8	0.0	100.0
	19~24세	250	16.4	56.8	8.0	4.4	0.4	0.0	13.2	0.8	100.0
현재 상태	중/고등학교 재학생	200	44.5	38.5	7.5	8.0	0.5	0.0	1.0	0.0	100.0
	학교 밖 청소년	50	24.0	66.0	4.0	2.0	2.0	2.0	0.0	0.0	100.0
	대학 재학생	200	16.5	55.0	8.0	3.5	0.5	0.0	15.5	1.0	100.0
	대학비진학 청소년	50	16.0	64.0	8.0	8.0	0.0	0.0	4.0	0.0	100.0

1) 친구/선·후배, 2) 알바몬 등 소개사이트, 3) 주변 지인(부모님, 어른, 형제·자매 등),
 4) 매장(사업장)의 구인광고, 5)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 6) 직업알선소개소,
 7) 학교·공공기관의 모집공고 등, 8) 기타

[그림 13]_ 2015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13. 부당한 대우 시 대응

1).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46.1% 진정하겠다

-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1051명 중에서 46.1%는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31.6%는 '친구나 지인과 상담'하겠다고 응답했고, 10.2%는 '포기하겠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겠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응답인 3.3%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응답자에서는 '그만 둬 6명, 부모님과 상의 16명, 항의가 16명'등이었다.

[표 22]_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산 실태조사	친구지인 상담	학교선생님 상담	노동부 진정	포기	기타	무응답	
전 체	1,051	332 (31.6%)	35 (3.3%)	485 (46.1%)	107 (10.2%)	47 (4.4%)	45 (4.3%)
알바경험 有	372 (100)	106 (28.5%)	11 (3.0%)	160 (43.0%)	53 (14.2%)	22 (5.9%)	20 (5.4%)
현재알바 中	136 (100)	38 (27.9%)	5 (3.7%)	60 (44.1%)	19 (14.0%)	8 (5.8%)	6 (4.4%)

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응답보다 '소극적 대응'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72명은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가 43.0%, '친구나 지인과 상담'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14.2%, '학교선생님과 상담'은 3.0%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응답 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적극적 해결 방식인 '노동부 진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방식인 '포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 중 '기타' 내용은 그만둬 4명, 부모님과 상의 5명, 항의 11명,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응답 중 '기타' 내용은 그만둬 1명, 부모님과 상의 3명, 항의 4명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 해결방법이 아닌 소극적 해결방법이나 '포기'를 선택하는 경향은 아르바이트를 경험 했거나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에게서도 비슷하게 나

타났다.

3). 청소년 40.9% 귀찮고 번거로워 신고 포기

- 부당한 대우에도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고 번거로워서(40.9%),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26.6%),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12.6%), 기타(6.2% 신고한다,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_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지 않는 이유?

아산 실태조사		도움요청 할 곳 몰라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부모/선생님 혼날까봐	귀찮고 번거로워	기타	무응답
알바경험 有	372 (100)	47 (12.6%)	99 (26.6%)	4 (1.1%)	152 (40.9%)	23 (6.2%)	47 (12.6%)
현재알바 中	136 (100)	15 (11.0%)	35 (25.7%)	1 (0.7%)	55 (40.4%)	13 (9.6%)	17 (12.5%)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인권(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자기의 인권을 지킬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귀찮고 번거로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된 노동인권대한 교육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청소년들의 자기의 권리침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귀찮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14.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1). 아르바이트 청소년 28.6% ‘일하는 청소년 보호법’ 모른다.

- 응답자의 1501명 중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4.7%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학생이 59.9%, 여학생이 71.5%로 여학생들이 10%이상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_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 여부 1-1

구 분	알고 있다		모 른 다	
응 답 자	680명(64.7%)		324명(30.8%)	
	남 (622명)	여(429명)	남(622명)	여(429명)
	373명(59.9%)	307명(71.5%)	215명(34.5%)	109명(25.4%)

[표 25]_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 여부 1-2

아산 실태조사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전 체	1,051	680 (64.7%)	324 (30.8%)	47 (4.4%)
알바경험 有	372 (100)	238 (63.9%)	113 (30.3%)	21 (5.6%)
현재알바 中	136 (100)	88 (64.7%)	39 (28.6%)	9 (6.6%)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63.9%로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약 30%가량은 ‘모른다’고 응답해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도 모른 채 일(노동)을 하고 있어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 청소년 90.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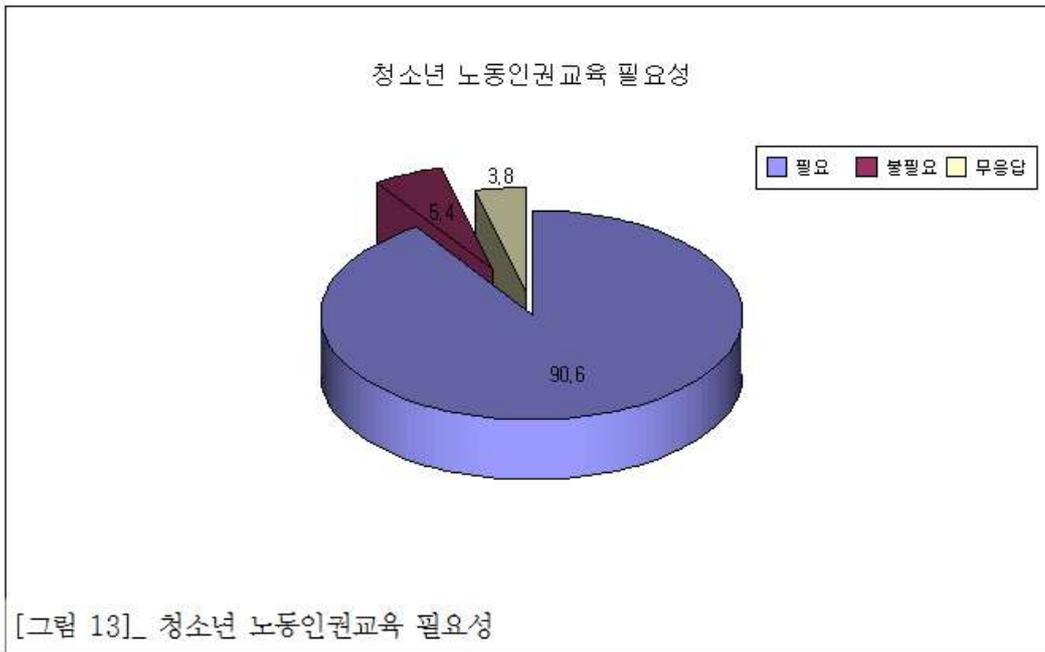
-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가 45.6%, ‘필요하다’가 45.0%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5.4%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90.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7.5%가, 여학생은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남학생에 7.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_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필요 여부 1-1

구 분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무응답	
응답자	480명(45.6%)		474명(45.0%)		57명(5.4%)		40명(3.8%)	
	남(622명)	여(429명)	남(622명)	여(429명)	남(622명)	여(429명)	남(622명)	여(429명)
	239(38.4)	241(56.1)	306(49.1)	168(39.1)	49(7.8)	8(1.8)	28(4.5)	12(2.7)



[표 27]_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필요 여부 1-2

아산 실태조사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무응답
전 체	1,051	480 (45.6%)	474 (45.0%)	57 (5.4%)	40 (3.8%)
알바경험 有	372 (100)	147 (39.5%)	184 (49.4%)	21 (5.6%)	20 (5.3%)
현재알바 中	136 (100)	56 (41.1%)	63 (46.3%)	11 (8.0%)	6 (4.4%)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372명 중 88.9%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체응답에 비해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

고 있는 청소년은 87.4%로 전체응답에 비해 3.2%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로 늘어났다.

[표 28]_‘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필요 여부 1-3

아산 실태조사		매우필요	필요	불필요	무응답
전 체	1,051	480 (45.6%)	474 (45.0%)	57 (5.4%)	40 (3.8%)
용화고	219명 (100)	79 (36.0%)	110 (50.2%)	14 (6.3%)	16 (7.3%)
온여고	325명 (100)	192 (59.0%)	126 (38.7%)	2 (0.6%)	5 (1.5%)
온양고	507명 (100)	209 (41.2%)	238 (46.9%)	41 (8.0%)	19 (3.7%)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던 용화고교의 경우 86.2%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0.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온양고교’는 8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9.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온양여고’는 97.7%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6. 청소년들이 말하는 아르바이트의 문제점과 의견

- 아르바이트 문제점이나 의견을 묻는 내용에 138명이 응답해 주었고, ‘시급(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지켜져야 한다’, ‘부당한 대우가 없어야 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지급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나 손님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준수와 청소년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9]_ 청소년이 말하는 아르바이트 문제점/대책 요약

구 분	응답	내 용
최저임금 인상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은 힘든데 시급이 너무 적습니다. - 국회의원님들이 최저임금으로 일해 보셔야 6030원이 얼마나 적은지 아실 테죠 - 최저임금이 너무 적어요. 최저임금 좀 올려 주세요. - 시급 올려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임금 준수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주들이 아직 많은데 청소년들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최저시급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제발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 최저 시급이라도 지키자. 야근 시킬 거면 추가 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부당한 대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존중이 필요하다. 주인이라고 알바생을 막대 하는 경우가 많다. - 제 때에 돈을 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따지면 적반하장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휴게시간이 없고 너무 막 부려 먹는다. - 시급 올리고 욕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지급일 준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주가 청소년임을 이용해 협박하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보수를 줬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해주시고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당을 잘 안주고 늦게 주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한다. - 주변 친구들이 돈을 바로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주/손님 무시하지 않았으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바도 소중한 사람이고 인권을 가진 사람이니 상처받을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 주세요. -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해주세요. - 손님들이 학생이라 만만하게 본다. - 청소년이라고 무시하시면 안돼요.
단속/처벌 강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청소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곳이 너무 많아요. 찾으면 수두룩하게 벌을 강화해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 청소년들 부러먹으려고 안달 난 악덕업주들 기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년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고용주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노동법 준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덕 고용주 때문에 많은 알바생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 자기 멋대로 알바를 채용했다가 자기 멋대로 자른다. - 부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위쪽부터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인권교육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있다는 걸 알아도 정확히 몰라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넘기는 사람 많습니다. - 악독한 고용주를 만나게 되면 임금은 물론 알바생 취급도 안 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 법에 대한 정보교육이 부족합니다.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알바 생들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기 전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교육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뿐 아니라 사장들을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얘기 했더니 고맙다고 이런 법들을 얘기 안 해주면 알 방법이 없다고 하심) -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 업주교육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곳이 아산에도 너무 많다. - 근로계약서 안 쓰는 곳이 대부분이고,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끊어 오라고 하지도 않음.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 보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있어 신고해도 해결은 안 되고 잘립니다. - 돈 때문에 신고하면 돈을 주고 잘라버린다. - 제 때에 돈 주지 않아 사업주에게 따지면 적반하장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기 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월급에서 세금은 안 뺐으면 좋겠습니다. - 어차피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은 다 똑같다.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 지금보다 조금 더 대우 수준이 좋아지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 업소 주인은 얼굴을 항상 펴야한다. 험한 인상일시 심리적 위협을 다소 주기 때문에

Ⅲ. 개선방안

1.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제재 강화

-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받은 경우'는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9.62%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만18세미만 청소년가운데 30.7%는 '7시간이상 장시간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은 44%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면 해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고 없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아르바이트 청소년 60.5%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식당사업주 위생 등 관련 교육에 '노동 관련법'을 배치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진행해야한다.

-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교육당국 인식개선과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확대

-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5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등 법정임금과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8%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귀찮고 번거로워 노동부 진정이나 신고를 포기'하겠다는 청소

년도 4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인식의 문제보다는 학교교육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교사들의 노동인권예 대한 인식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부강사를 통해 진행되는 1회성 강의 형태의 교육이 아닌 교과과정에 노동인권예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저학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90.6%의 청소년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그 필요성을 알 수 있다.

3. 눈높이를 맞추는 활동과 지속적 관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서 권리의식 대한 강조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내용이 의미, 사례를 중심의 내용 등 눈높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집중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 권리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쉽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활동을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다루어 졌듯이 배달대행업 등 노동정책의 변화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아르바이트 현장의 변화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본 실태조사는 아산지역 '청소년노동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솔직히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문의 041 534-3626)

1. 성 별 ①여 ②남

2. 출생연도 _____년 (_____고등학교 ____학년)

3.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①알고 있다.(시간당 _____원) ②모른다

4. 법정임금(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과 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

5.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나요?
①현재 하고 있다 ②한 적이 있다 ③없다 → “없다”에 답한 경우 “12번 문항으로 이동”

6. 근무시간과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 - 1일 _____시간(1주 _____시간), 임 금 - 시급 _____원(혹은, 월 _____원)

[6-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6-2]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임금	<input type="checkbox"/> 반기로 한 임금을 받지 못 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
해고 / 퇴직	<input type="checkbox"/>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한 적이 있다.
폭언 / 폭행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
성희롱/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한테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산업재해	<input type="checkbox"/>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기타	기타(<input type="checkbox"/> 직접 작성해주세요) 뒷면으로 ...

7. 아르바이트를 하는(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편의점 ②식당 ③패스트푸드점 ④커피숍 ⑤예식장·뷔페 ⑥판매원 ⑦PC방
 ⑧주유원 ⑨배달 ⑩전단지 ⑪일용직(건설 등) ⑫공장 ⑬기타()
 ※ “배달”에 답한 경우 (7-1)에 답해 주세요.

(7-1)현재 일하는 배달 오토바이(차량)의 경우 자동차(오토바이)보험 외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둘 다 가입돼 있음. 자동차 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산업재해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잘 모름 기타()

8.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떤 기간에 하십니까?

- ①학기 중 방과 후 ②학기 중 주말 ③방학 중 ④기타()

9. 편히 쉴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있다 없다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①예 ②아니오
(10-1) 작성했다면 1부 교부 받았나요? ①예 ②아니오

11. 어떤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 ①친구나 지인소개 ②학교나 선생님 추천 ③생활정보지 ④업소 구인광고
⑤직업소개소 ⑥노동부 워크넷 ⑦알바사이트나 웹 ⑧기타()

12. 아르바이트를 하는(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생계비마련 ②등록금등 학업관련 ③용돈 ④사회생활 경험 ⑤기타()

13.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요(어떻게 하고 있나요)?

- ①친구,지인과 상담 ②학교선생님과 상담 ③노동부 진정등 ④포기 ⑤기타()

14. 부당한 대우에도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②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부모님(선생님)에게 혼날까봐
④귀찮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⑤기타()

15.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

16. 법정임금, 산재보험 등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매우 필요하다 ②필요하다 ③필요 없다

17.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이나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